

2022년 2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지정) 추천지원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추천지원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사업목적

-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벤처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추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및 판매 노출증대로 벤처기업의 매출증대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상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상품물
- 지원내용 : 벤처창업 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벤처나라 홍보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부스 운영,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벤처나라 실적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SGI이행보증모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시 벤처나라 등록제품 우대



【인증마크】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022년 15개 기업 추천 예정 (별도 비용 無)
- 지원기간 : 2022. 10 ~ 2023. 04
- 지원대상 : 대구에 사업장을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만료일이 '22.12.31 이후여야 함)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16.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변경사항

-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정보조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조회가능
-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제품으로 납품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에서 발급(10일 소요)
- ③ **청년기업(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은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신청 제외대상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폐업, 부도, 파산 및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에 속하는 상품인 경우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 지원분야 : 직접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물품 및 서비스
 -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공사용자재, 기타아이디어상품 등
 - **국민안전물자 14종**에 속하는 경우, 품질 인증 및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 ①체육시설탄성포장재 ②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③미끄럼방지포장재
 - ④도막형바닥재 ⑤철제가드레일 ⑥철제도로중앙분리대 ⑦철제교량난간
 - ⑧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⑨알루미늄교량난간 ⑩낙석방지책 ⑪차선분리대
 - ⑫흙콘크리트 ⑬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⑭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제품안전대상품목에서 조회 가능**

- 지원내용
 - 벤처나라 내 상품등록 및 판매를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 서류 및 벤처나라 운영 프로세스, 등록 방법 등 컨설팅
 - ※ **선정된 추천기업의 경우 조달청에서 하는 적합성 심사시 기술·품질평가 면제**
 -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해야 지정 효력이 발생

III 선정 방법

- 선정평가 : 기술 및 사업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관로촉진위원회 개최를 통한 기술·품질 서면평가
- 선정기준
 - 기술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등
 - 품질평가 :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 평가면제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면제하고 바로 추천
- 결과통보 : 개별 이메일통지

IV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10. 12(수) 까지

○ 접수방법 : * 이메일 접수 + 우편/방문접수 모두 진행해야 접수완료

① 사업공고 → 붙임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

② 신청서류 작성 후 직인날인하고 첨부서류 준비

③ 신청서류, 첨부서류를 1개 파일로 합쳐서 pdf로 스캔

④ kyh920@ttp.org로 접수 후 담당자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 이메일제목 : 벤처나라 추천지원 신청_기업명

⑤ 신청서류 원본과 첨부서류 1부를 짐게로 철하여 방문/우편접수

* 제본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출서류	서식	비고
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을 위한 서류 제출서 원본	서식1	필수
2	신뢰서약서 원본	서식2	필수
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원본	서식3	필수
4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5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일 경우),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일 경우) 사본	-	해당시
6	상품설명서 원본	서식4	필수
7	법정 및 품질인증제품 납품 약약서 원본	서식5	필수
8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사본(인증서,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해당시
9	기술 평가 증빙자료(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해당시
10	품질 평가 증빙자료 사본 (품질인증서, KC인증 등 품질관련 인증서,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성적서) * 국민안전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인증서나 공인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제출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등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필수 제출	서식6	필수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시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지정 후 상품 등록시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OEM
 (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 필수

V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이 메 일	kyh920@ttp.org
	방문/우편	[41256]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4층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담 당 자		R&D지원팀 김영현 주임연구원 (Tel. 053-757-3738) R&D지원팀 배은혜 선임연구원 (Tel. 053-757-3732)

VI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

평가면제 대상

※제출마감일 기준, 인증 및 발급받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평가 면제 가능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관련규정 제8조)

- ① 성능인증(EPC)제품
- ② 신제품(NEP)
- ③ 우수품질소프트웨어인증(GS)
- ④ 신기술(NET)제품 ※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인정한 경우만 해당
- ⑤ 녹색인증제품
- ⑥ ICT융합품질인증제품
- ⑦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 ⑧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면제를 인정한 제품
※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면제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기술평가 면제대상(관련규정 제9조)

-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②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 ③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 ④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 ⑤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품질평가 면제대상(관련규정 제10조)

- ①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 ②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 ③ 성능인증(K마크)제품
- ④ 고효율에너지 인증표시 제품
- ⑤ 품질보증조달물품
- ⑥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제품
- ⑦ 보건제품 품질인증(GH)제품
- ⑧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 ⑨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